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형사법적 탐색: 법적 지위와 현행법 기준의 저촉성을 중심으로

Hologram-demonstration's legal status and its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김 대 원* · 지 영 환**
Kim, Dae-Won · Ji Young-Hwan

목 차

- I. 서론
- II. 홀로그램 시위의 의의
- III. 연구내용
- IV. 결론
- V. 연구의 한계 및 의의

국문초록

2015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시위가 진행됐다. 사람이 아닌 가상의 영상이 가두시위를 전개하며 구호를 외친 홀로그램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본 탄 시위가 2016년 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홀로그램 시위의 법적 지위와 현행법 기준의 저촉성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현직 경찰 61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논문접수일 : 2016. 10. 17.

심사완료일 : 2016. 11. 10.

게재확정일 : 2016. 11. 10.

* 언론학 박사 · 카카오 정책지원팀(주저자)

** 법학 박사 · 정치학 박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동 연구자)

홀로그램 시위의 특성에 대한 고찰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정보사회의 대중과 가상현실 기술 간 결합의 산물로 규정될 수 있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공개 모집 형태로 영상에 등장할 구성원과 시위에 표출할 메시지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시위의 보편적 정당성을 제고하며, 형식적으로는 시위에 등장할 영상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인터뷰 결과, 홀로그램 시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경찰관의 관점에 따라 양분됐다. 시위 목적성에 주목한 응답자는 홀로그램 시위 역시 현행법 내에서도 '시위'로 규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데 반해,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 주체가 된 홀로그램 시위의 양상에 중심을 둔 응답자들은 법의 보완 및 추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홀로그램 시위와 공중(公衆) 안녕의 훼손 간의 상관성에 대한 견해는 응답자 간 상이했다. 홀로그램 시위와 관련된 준칙 수립 시 시위 시간, 홀로그램 영상의 밝기와 유관된 소음의 허용 범위, 영상의 투사 대상 및 시위 허용 장소 등의 규제 기준 뿐만 아니라, 강제적 해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인터뷰 대상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홀로그램 시위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칙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동의했다.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영상에 대한 노출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시각적 피해와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영상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홀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간 엇갈렸다.

일부 응답자들은 사회윤리 혹은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영상의 홀로그램 영사는 집시법과는 무관하게 형법 상 저촉혐의로 법적 처리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공감하는 이들 중 일부는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시위에 쓰일 홀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전 관리 및 통제는 현실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판단된다. 현행 법 하에서는 홀로그램 시위 그 자체 혹은 그것이 기반이 된 현저한 위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권력은 홀로그램 시위를 시민 단체 주도의 문화제와 동등한 차원에서 바라볼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홀로그램 시위, 법적 지위, 현행법 저촉성, 경찰, 인터뷰

1. 서론

2015년 4월 10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앞에서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의 운곽은 뚜렷하게 대중(大衆)에게 보였고,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 역시 거리의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들렸다. 형태 상, 시위 참여 인원은 1만 7,857명에 달했다(집회 주최 측 추산). 그러나 시위대 속에 실제 사람은 없었다. 이 시위에서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한 것은 사람이 아닌 홀로그램(hologram)이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스페인의 집권당인 국민당(People's Party)이 2014년 12월 통과시킨 시민 안전법(Citizens Safety Law)에 대한 항의의 목적에서 열렸다. 시민 안전법은 의회와 관공서 등 주요 공공시설 주변 시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시위 주최자에게 최대 60만 유로()의 벌금 부과를 가능하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홀로그램 시위는 2015년 7월 시민 안전법의 시행에 앞서, 스페인의 시민 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 안전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자 마련된 것이었다. 홀로그램 시위에 힘입어 주최자들은 33만 명으로부터 시민 안전법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아냈다.

2015년 스페인에서의 시도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선전(宣傳) 효과가 확인된 이후, 홀로그램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6년 2월에는 국내에서도 스페인 시위를 본 딴 홀로그램 시위가 열렸다.

대중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의 공유 혹은 확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은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써 적극 활용되곤 한다. 정치적 가치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언론 자유의 핵심이긴 하지만,¹⁾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중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 자유가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권리가긴 하지만,²⁾ 개인 혹은 특정 단체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 공공의

1) 문재완,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서울: 늘봄, 38면

안녕과 질서 유지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³⁾ 홀로그램 시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캠페인으로서의 홀로그램 시위의 의미와 속성 및 실효성을 고찰한 뒤, 법집행자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 홀로그램 시위의 법적 지위, 그리고 유관된 현행법과의 저촉성을 검토했다.

연구 주제를 논의하는 대상로는 현직 경찰을 선정했다. 이는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위해 위법 시위를 통제하는 임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경찰의 직무적 전문성에 무게를 둔 선택이었다. 본 연구진은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사례와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는 시위 현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경찰이 여타의 법집행자에 비해 실질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써 실효적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뷰는 본 연구진이 홀로그램 시위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탐색한 결과로 도출한 쟁점 사안을 근거로 진행됐다.

II. 홀로그램 시위의 의의

1. 홀로그램 시위의 개념

홀로그램은 “물체에서 나오는 파동과 기준으로 잡은 파동 사이에서 간섭을 일으켜 물체에 관한 정보를 사진건판에 기록한 다음, 여기서 다시 물체의 3차원을 얻는” 방식으로 확보된다(김남·박재형·임영태·박미란, 2011, 18쪽).⁴⁾ 홀

2) 헌법 제21조 제1항 참고

3) 헌법 제37조 제2항 참고

4) 홀로그램 기술은 아날로그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 유사 홀로그램으로 나뉜다. 아날로그 홀로그램과 디지털 홀로그램은 실물을 실존하듯 재현하는 효과 부문에서 동일하다. 차이는 사용 기술이다.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필름을, 디지털 홀로그램은 사물로부터 반사된 빛을 디지털화한 결과에 기반을 둔다. 디지털 기술은 3차원 정보를 오롯하게 기록, 복원할 수 있기에 “완전한 홀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김승철, 2015, 98면). 유사 홀로그램(pseudo hologram)은 말 그대로 홀로그램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을 말하는데, 세부적으로 사전에 촬영한 영상을 반투과형 스크린을 통해 홀로그램 효과를 내는 방식과 여러 개의 카메라를 통해 촬

로그램은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 형상(刑象)의 3차원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홀로그램을 보고 실제 물체처럼 느끼게 된다.⁵⁾ 홀로그램은 실감(實感) 환경 구현을 위한 차세대 영상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시·공연뿐만 아니라 가정용 기기,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김승철, 2015).



[그림 1] 스페인의 홀로그램 시위 장면

[그림 1]⁶⁾의 스페인 시위는 상업적 영역에만 머물렀던 홀로그램의 활용 영역을 정치적으로 확장시켰다. 홀로그램 시위⁷⁾는 시민 안전법에 반대하는 100

영한 영상으로 홀로그램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나뉜다.

5) 홀로그램은 그리스어로 '완벽한'이란 뜻의 '홀로(holo)'와 '그림'을 가리키는 '그램(gram)'이 합성된 단어다.

6) 출처: <http://www.hologramasporlalibertad.org/>

7)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集會)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모임 등을 말한다. 시위(示威)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며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등 법률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견해에서 둘 간의 차이는 주체의 장소 이동이다. 이 관점 하에서 고정된 기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홀로그램 시위는 '시위'가 아닌 '집회'로 칭해져야 한다.

집회가 단순 회합에 그치지 않고, 기세와 위력으로 일반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여 개의 시민 단체와 스페인 광고기획사인 DDB 스페인에 의해 이뤄졌다. 주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영상과 메시지를 취합한 결과를 시위에 활용했다.⁸⁾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시위 당시에는 2,000 개 이상의 가상(假像) 이미지가 사용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하루 앞 둔 2016년 2월 24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정문 건너편)⁹⁾에서 홀로그램 시위¹⁰⁾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위를 주최한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시위 군중의 모습은 사전 희망자 120여 명을 모아 크로마키(chroma-key) 방식¹¹⁾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

행사하려는 실질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집회와 시위 간의 구별은 무의미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김상겸, 2008; 이주락, 2011). 현행법에서 시위를 개념 정의한 집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위는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의 행진 외에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포괄하고 있다. 후자의 의미에 방점을 두고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집단행동을 시위로 규정했다.

홀로그램 시위의 참고 사례가 스페인과 서울에서 발생한 두 가지 뿐이기에, 현 시점에서 홀로그램 시위의 일반적인 모습을 특정 형태로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선도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의 홀로그램 시위에서 앞선 두 사례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앞선 두 홀로그램 시위는 홀로그램 형상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이 짙게 어두워지는 일몰 이후의 시간에 옥외에서 진행됐다. 이와 같은 시간과 장소의 선택은 홀로그램이라는 새롭고 낯선 기술이 가진 상대적 신묘함을 극대화하여 시위 주체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일반 대중이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홀로그램 시위는 일반 대상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옥외 장소에 이뤄지며, 그것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야간에 진행되는 양상을 띠는다고 볼 수 있다. 즉, 홀로그램 시위를 옥외에서 진행되는 정치 캠페인으로 규정해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기에 옥외 집회의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현행법 테두리를 근거로 홀로그램을 활용한 정치 캠페인을 ‘홀로그램 시위’로 규정한 본 연구진의 접근은 무리없다고 판단된다.

- 8) 이 시민단체의 홈페이지(<http://www.hologramasporalibertad.org/en.html#home>) 첫 화면의 ‘참여하기(take part)’를 클릭하면, 메시지를 남기고, 홀로그램 시위대의 일원이 될 자신의 영상을 웹캠(web cam)을 통해 남길 수 있다. 주최자들은 이렇게 취합된 영상과 자신들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중합하여 만든 홀로그램 영상을 의회 앞에 사전에 설치한 장치에 투사시켜 ‘시가행진을 하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홀로그램 시위를 만든 것이다.
- 9) 당초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016년 1월 25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홀로그램 집회 개최 신고를 추진했으나,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최초 집회 희망지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 부근이다.
- 10) 이 시위는 주최 측에 의해 ‘2.24 엠네스티 유령집회’란 이름으로 칭해졌다. 시위 명칭은 사람이 실존하지 않고 홀로그램이 대신하는 상태 혹은 유령처럼 보이는 홀로그램 효과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전까지 ‘유령 집회’는 신고만 될 뿐 실제 개최되지 않는 집회를 일컫는 용어로 쓰였다.

용했다.¹²⁾ 홀로그램 시위에 쓰일 피켓 문구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계정(amnestyhologram)을 통해 공모됐다. 홀로그램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 역시 카카오톡으로 취합된 음성메시지가 활용됐다.¹³⁾ 홀로그램 영상은 시위 당일 오후 8시 30분부터 30분 간 사전에 설치된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됐다([그림 2]¹⁴⁾).



[그림 2] 광화문 홀로그램 시위 장면

홀로그램 시위는 유관된 설명 없이 사전에 고지된 예상시간(오후 8시 30분)에 시작됐다. 시위는 10분 분량¹⁵⁾의 사전 편집된 동영상을 세 차례 반복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변의 빛에 의해 홀로그램 영상의 선명이 영향을 받아서, 주최자들은 시위를 촬영하는 취재진의 조명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위는 홀로그램 시위의 취지와 배경,¹⁶⁾ 그리고 시위의 목적이

- 11) 색상 차이를 이용하여 특정 피사체를 다른 화면에 합성하는 기법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일기 예보에서 날씨 예보 화면과 기상 캐스터를 겹친 화면을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으로 써 널리 알려져 있다.
- 12) 스튜디오 영상 제작 과정이 담긴 동영상 파일의 URL: <https://youtu.be/9MxRBqCwjfE>
- 13)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총 180여건의 음성, 문자메시지가 취합됐다.
- 14) 연구진에 의해 촬영된 사진
- 15) 9분 여 간은 홀로그램 동영상 중심의 화면으로 시위가 전개됐고, 마지막 30여 초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취합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가 사전에 취합된 음성과 더불어 화면에 재생됐다.
- 16) 경찰의 물대포와 최루액 사용량, 경찰(서울 경찰)이 일반 대중의 불편을 이유로 불허한 집

있던 현 정부의 집회·시위 자유 제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홀로그램 시위를 ‘온라인으로 확보한 동조자의 영상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거리 등에 투사시켜 일반 대중들이 해당 시위의 동조자들이 현장에 실제 참여하는 듯 느끼게 만드는 정치 캠페인’으로 정의했다.

2. 정치 캠페인으로서 홀로그램 시위의 의미

가. 정보사회의 대중과 가상현실 기술의 결합

21세기를 흔히 정보사회로 일컫는데, 이 사회의 도래를 이끈 동력은 인터넷이었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조성된 온라인 네트워크는 무리지어 존재하는 군중을 결속시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다수로 만드는 터전이 됐다. 온라인에서 결집한 대중은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특정 가치를 공유하거나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제고시켰다(백육인, 2008). 이러한 대중의 정치적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서 구현된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촛불집회다. 백육인(2008, 187면)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대중의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현실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광장에서 촛불이 되는 실천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형상으로 표현했다.

인터넷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정보사회의 대중은 특정한 혹은 특정 집단으로 규정되긴 어렵고, 그보다는 인터넷 그 자체, 혹은 온라인 네트워크로 해석되는 게 적합하다(Rheingold, 2002). 모바일 기기 확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라는 대중을 잇는 소통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별 대중의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 편의성이 증대되어 대중 사회운동 역시도 보다 활발해진다. 특정 집단이 주축이 돼 여론을 형성한 이전과 달리, 정보사회의 대중은 개인이 각 개체가 수평적 구조 하에서 주체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역동성의 구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 현황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제공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대중은 서로를 잇고 사회적 협력 형태의 집단화를 이루는 동시에, 서로의 정보·지식·경험을 공유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집단지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온라인을 매개로 정치적 가치와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대중의 모습을 사회학자인 하워드 레인골드(Howard Rheingold)(2002, 12쪽)는 '영리한 군중(smart mobs)'으로 표현했다. 때로 몰려다니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으로 그려졌던 군중이 인터넷을 수단화 하여 전략가로 변모한 것이다. 대중의 지혜를 기반에 둔 집단지성은 "네트워크의 구조 수평화, 탈근대에서의 권위 해체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지식생산의 주체로 부상할 잠재력" (최항섭, 2009, 287면)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¹⁷⁾

홀로그램 시위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산재한 개인을 연결하는 데 익숙한 대중이 기술의 보편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상현실 기술을 대중 사회운동에 접목하여 새롭게 고안한 정치 캠페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 웹페이지를 만들어 가상의 집회 혹은 시위 화면을 만들어 해당 활동에 동조하는 사람의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노출하는 사이버 집회·시위의 방식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었다.¹⁸⁾

홀로그램 기술은 웹페이지 상에 머물렀던 사이버 집회 및 시위를 오프라인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이다. 전술된 사례와 같이, 홀로그램 시위는 온라인을 통해 가상의 시위대를 모집한다. 시위 현장에서 등장할 가상의 영상, 목소리, 그리고 시위대가 들 피켓에 쓰일 구호까지 온라인으로 공개 취합한다. 이 과정은 웹페이지 중심의 사이버 가두행진과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홀로그램

17) 네트워크 기반의 대중 사회 운동은 주체의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느슨한 결합으로 인해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Byrne, 2007). 이항우(2012)는 '2008년 촛불시위'를 연구를 근거로, 네트워크 사회운동에도 수직적 구조 하에서의 강력한 통제 및 운영 방식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18) 2010년의 'MBC 공영방송 사수'를 요구하는 사이버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시위를 주도한 대중들은 일본의 퍼레이드 사이트인 'IS parade (isparade.jp)'에 해당 웹페이지를 만들어 자신들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사람 형상의 이미지의 머리 부분에 배치하고, 응원 메시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이버 가두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이러한 방식 외에 집회·시위의 대상이 되는 해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방명록에 동일한 항의성 글을 남기거나, 항의 대상 홈페이지의 웹마스터 혹은 대표의 계정으로 여러 명이 혹은 자동 이메일 보내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체 메일을 보내기, 혹은 해당 웹사이트의 접속 트래픽을 늘려 해당 서버 컴퓨터가 과부하에 걸려 다운되게 하는 방식이 활용됐다(이희훈, 2010, 503-504쪽).

시위는 정보사회의 대중과 가상현실 기술 간 결합의 산물인 것이다.

나. 홀로그램 시위의 속성

앞서 개략된 사례를 통해 확인된 홀로그램 시위의 우선적 가치는 다수의 대중 참여이다.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는 공개 모집이 활용된다. 홀로그램 영상에 등장할 구성원과 메시지의 공개 모집은 내용적으로는 해당 시위의 보편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가상 이미지의 다양성을 높이는 효과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공모(公募)의 기능은 닐 스멜서(Neil Smelser, 1962, pp.35-38)가 제안한 집합행동의 6가지 주요 요인을 통해 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6개 요인은 구조적 촉진성(structural conduciveness), 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 일반화된 신념의 성장과 확산(growth and spread of a generalized belief), 촉발 요소(precipitating factors), 참가자의 동원(mobilization of participants for action), 그리고 사회통제장치의 작동(the operation of social control)이다.¹⁹⁾ 6개 요인은 집합행동의 발현 측면에서 순서를 가진 일련의 구조로서 묶여 기능을 한다. 하위 단계의 조건 충족에도 상위 단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집합행동은 발생할 수 없다(이창무, 2007). 예를 들어, 특정 대상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참가 주체를 확보하지 못하면, 유관된 집단행동은 현실화될 수 없다. 홀로그램 시위의 전면에 활용된 영상과 음성 그리고 구호의 공모는 응축된 집합행동 의지의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 확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중을 통한 정치적 구호의 공개 모집은 시위 주최자에게는 일반 대중에게 소구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전 문구를 용이하게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9) 구조적 촉진성은 집합행동을 허용하는 사회구조적 여건, 구조적 긴장은 사회 주체 간의 갈등이나 이상적 가치와 실제 규범 간의 괴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감과 스트레스, 일반화된 신념의 존재는 구조적 긴장 요인에 대한 복수(複數)의 공통된 인식, 촉발 요소는 전술한 인식의 행동으로 활성화 시키는 기폭제, 참가자의 동원은 집합행동의 구현을 위한 사람의 모집, 그리고 사회통제장치의 작동은 앞서 5가지 요인을 억제하는 사회적 기제이다. 사회통제장치는 집합행동 발생 이전의 사전 예방 기제와 집합행동 발생 시 통제 기제로 구분될 수 있다(Smelser, 1962, pp.35-38; 이창무, 2007, 325-327쪽)

즉, 정치적 선전 문구 고안 과정에 동조하는 일반 대중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홀로그램 시위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홀로그램 시위에의 영상 혹은 음성을 통한 참여는 시위에 대한 대중의 관여도를 높일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상이나 목소리를 시위에 포함시키는 행동은 해당 시위에 대한 실존적 차원의 참여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위 관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여도의 제고는 해당 시위에 대한 몰입과 동조 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²⁰⁾

다. 홀로그램 시위의 실효성

정보사회 속 대중과의 결합 편의성과는 별개로, 홀로그램이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실효적 수단으로 선택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목성이다. 홀로그램 시위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중의 이목을 모으는 데 용이하다. 앞선 사례들도 홀로그램이 시위에 활용됐다는 이유로 세간의 관심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1시간 분량의 ‘자유를 향한 홀로그램(Hologram for freedom)’이란 이름의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소셜미디어에서 홀로그램 시위는 400만 건 언급됐으며, 시민 안전법에 대한 33만 건의 반대 서명을 모은 데 기여했다.

둘째, 가상이란 본연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집회 및 시위 자유의 억압된 상황 표출의 실효성이다. 스페인과 국내의 홀로그램 시위 모두 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일반 대중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혹은 침해 위기에 놓인) 상황 그 자체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홀로그램이 선택됐다.²¹⁾ 국내의 광화문 홀로그램 시위 때도 “집회의 자유가 유령이 되어서

20) 관여도의 제고는 특정 주제 혹은 집단에 대한 의견 일치 강도를 높인다(나은영, 1995; 2001; 정일권, 2006)

21) 스페인 홀로그램 시위는 시민 안전법의 의회 통과로 주요 공공시설 부근에서의 정치 행동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 청와대 인근 집회와 행진이 경찰에 의해 불허되고 있었다. 이에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현 정부를 대상으로 집회와 시위의 보장을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착안했다.

우리(시위대)가 유명이 됐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시위 초반에 삽입되어 시위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활용됐다.

기존의 시위에 비해, 진행 과정에서 시위대가 점유하는 물리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홀로그램 시위의 장점이다. 다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홀로그램으로 변환된 시위대가 점유하는 실제 공간은 영상이 투사되는 화면에 한정된다. 시위가 헌법으로 보장된 일반 대중의 권리임에도 공권력의 불가피한 제한이 가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시위대가 장소 혹은 도로의 사용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타 법익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이다(백창현, 2006). 일반적인 시위와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의 점유로도 구현될 수 있는 홀로그램 시위의 특성은 공권력으로부터 보다 많은 자율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홀로그램 시위의 법적 쟁점

가.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이론적·해설론적 측면: 법적 지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홀로그램 시위 속 홀로그램의 법적 지위에 주목했다. 국내의 법 인식에서 집회와 시위는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多數人)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며,²²⁾ 시위 역시도 ‘다수인’이 주체자로 인식되고 있다.²³⁾

집시법 제18조(참가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를 따라야 하는 대상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이다. ‘자(者)’는 사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현행법상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질서유지 지시에 대한 준수 대상은 사람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시위의 주요 특성은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인데, 집합행동 역시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행위를 의미”한다(이창무,

22)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23) 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1헌바14 판결

2007, 324면). 즉, 작금까지 이론상 시위는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여 소통과 교류하고, 그 결과를 공포(公布)하며 일반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선전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홀로그램이 주체가 되는 홀로그램 시위는 법적 구성요건이 일반 시위와 다른 것이다. 요컨대, 주체가 ‘다수의 사람’이 아닌 무생물(無生物)이기에 이론상 홀로그램 시위를 시위로 규정할 근거가 모호한 것이다.

앞선 견해는 홀로그램 시위의 전면에 등장하는 주체가 가상 이미지이긴 하지만, 실질적 주최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시위에 쓰인 홀로그램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홀로그램 시위의 기능적 측면에 방점을 둔다면, 홀로그램 시위도 동·식물이나 여타의 사물을 동원하여 메시지를 현출(顯出)하려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대중에 대한 소구력 제고 차원에서 시위 혹은 집회 중간에 삽입되는 영상과 달리, 홀로그램 그 자체가 시위의 전부가 되는 홀로그램 시위를 기존 영상제의 확장판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위 양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을 수립했다.

연구문제 1: 홀로그램 시위가 법적으로 시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

나. 형사법적 관점: 현행법 기준의 저촉성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홀로그램 시위의 현행법 저촉성 부분에 주목한다. 집시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집회 혹은 시위는 금지되어 있다. 일반인의 통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음성도 일반 대중에 불편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²⁴⁾ 홀로그램 영상은 네온사인(neon sign)이나 입간판의 조명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홀로그램 시위 그 자체만으로는 경찰권으로 부터의 해산(解散) 요구를 받을 법적 사유가 미약하다. 홀로그램의 특성 상 옥외 집회 시 일몰 이후 진행되어야 하는 물리적 한계도 사전 신고와 질서 유지인 확보의 조건을

24) 집시법 제14조 참고

충족하면 문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²⁵⁾ 이와 같은 경찰의 개입 최소화와 군중 내부의 자정 작용 강화를 중시하는 진화된 사회 정체성 이론(evolved social identity theory)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 이론은 경찰의 편의적 판단이 군중의 폭력성을 증폭시킬 수 있기에, 군중에 대한 불필요한 외부 자극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이론 하에서는 절차와 제도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홀로그램 시위 역시도 현행 법 상의 저촉 논의에서 자유로운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위 현장과 홀로그램 시위의 접목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즉 홀로그램 시위로 인해 초래된 흥분이 여타 군중에게 전염된다는 전염이론(contagion theory)의 기반 하에서는 적극적인 통제 논리가 옹호될 수 있다 (황규진·김학경·성주환·권예원, 2012, 80-83면 참고). 형식적 측면의 하자는 없더라도 홀로그램의 내용이 폭력적 상황을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재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주장이 전염이론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견지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바라보고자 한다. 이에, 홀로그램 시위와 현행법상 마찰을 일으킬만한 부분에 대한 탐색을 연구문제 2로 설정했다.

연구문제 2 : 법 저촉성 차원에서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논의되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Ⅲ. 연구내용

1. 연구방법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실시됐다.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 연구에서 관련된 정보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와의 인터뷰는 연구 주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받는 데 실효적이다(Yin, 2003, 90

25) 집시법 제10조 참고

쪽). 경찰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집시법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직무상의 특징에 근거해, 본 연구진은 홀로그램 시위를 형사법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 경찰을 여타 유관된 법률 전문가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했다.

인터뷰는 응답자는 연구 주제인 홀로그램 시위의 개념과 2015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벌어졌던 실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살펴본 후,²⁶⁾ 연구진이 제시한 문항에 응답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항에는 두 가지 연구문제 외에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대한 홀로그램 시위의 직접적인 위협 여부, 소음이 없는 홀로그램 시위의 위법 가능성, 소음이 없고 통행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경찰관의 해산 강제 권한 여부 등이 인터뷰 과정에서 논의됐다. 인터뷰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석 달여 간 진행됐다.

인터뷰는 응답자의 여건과 희망에 따라 대면, 유선,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터뷰에는 총 61명의 현직 경찰이 참여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남성은 50명(83.3%), 여성은 11명(16.7%)이었다. 최소 연령은 25세, 최고령은 61세였다. 30~39세가 35명(57.4%)로 가장 많았다. 40대와 50대가 각각 12명(19.7%)과 7명(11.5%), 20대가 5명(8.2%), 60대가 2명(3.3%)이었다. 인터뷰 대상자에는 2015년 입직한 경찰부터 2016년 기준으로 경력 35년의 경찰관까지 포함됐다. 경찰 경력은 10년 미만이 33명(54.1%), 11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15명(24.6%),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이 7명(11.5%), 30년 이상이 6명(9.8%)이었다. 직급을 낮은 직급부터 정리하면, 순경 11명(18.0%), 경장 19명(31.2%), 경사 11명(18.0%), 경위 15명(24.6%), 경감 4명(6.6%), 총경 1명(1.6%)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 별 세부 정보는 <부록 1>에 수록됐다.

2. 홀로그램 시위의 법적 지위

홀로그램 시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엇갈렸

26)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언론 매체의 사진 취재로 확보된 스페인 마드리드 시위의 모습이 담긴 복수의 이미지도 제공했다.

다. 대다수 응답자는 ‘사람’이 아닌 홀로그램 그 자체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홀로그램 시위를 시위로 규정할 근거는 현행법상에 없지만,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 점유와 시위에 내포된 정치적 목적성 등을 감안하여 시위로 인식될 수 있다고 답했다. 홀로그램 시위가 도화선이 되어 예상치 못한 사고나 혼란 등 공중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과 경찰이 해당 시위를 해산할 사유(事由)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도 홀로그램 시위를 현 체계에서도 법적 관리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의견의 논거로 쓰였다.

“일반적인 시위와 비교할 때, 홀로그램 시위는 단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다.” (경감, 61세·연번 61번)²⁷⁾

홀로그램 시위 역시 사람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기에, 홀로그램 시위를 충분히 현행 집시법 테두리에서 둘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주목한 대상은 홀로그램 시위의 기술 인력이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운영 인력 역시 시위 참여자로 분류하면 ‘사람’에 의해 주최되는 활동이기에, ‘다수인’이 참여하는 법률상 집회 및 시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홀로그램 시위를 현행법의 틀에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3D 홀로그램 송출위한 장비 운용 인원이 2인 이상이라면, 집회로 볼 수 있다. 유관 인원이 1명이라면, 1인 시위로 판단할 수도 있다. 즉, 장비 운용자를 집회 시위의 주요 주체로 판단하면 되기에, 현행법으로도 홀로그램 시위는 관리 가능하다.” (경사, 35세·연번 16번)

앞서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주장한 응답자들은 법의 보수적 적용을 강조했다. 이들은 시위 양상과 의도까지 포괄하더라도 ‘사람’만이 집시법 준수 의무를 지닌 대상이기에, ‘사람이 아닌’ 홀로그램 영상의 행동에 기반을 둔 시위를 현행법으로 제재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²⁸⁾

27) 연번은 취합 과정에서 연구진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된 것이다. 연번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세부 신상 정보는 <부록 1>에 담았다.

28) 현 집시법의 보안을 강조한 응답자들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수단(경장, 31세·연번 6번)’이

“홀로그램만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시위로 간주하긴 어렵다. 여타의 유관 법률을 토대로 홀로그램 시위를 현행법 내에서 다루려고 하는 접근은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反)한다.” (경사, 38세·연번 31번)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적극적 법 적용 차원에서 제안된 홀로그램 운용 인력에 대한 법적 판단도 추가적인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빌리기 위한 용역 인력을 시위의 적극적 가담자로 간주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적극적 법 적용을 제안한 경찰들도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난점에 대한 해결책 차원에서 법 적용 대상을 화면에 투영되는 영상이 아니라 유관된 장치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률상의 추가 없이도 홀로그램 시위가 관리 가능 영역 내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집시법을 적용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법 적용 시 여러 가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보다는 홀로그램과 유관 장치를 통째로 장치로 묶는다면 충분히 현행법으로도 홀로그램 시위를 관리할 수 있다.” (경위, 50세·연번 18번)

앞서의 판단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 기계·기구 등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집시법 14조를 응용한 것이다. 사전에 녹음된 정치적 구호의 음성을 수반한 작금까지의 홀로그램 시위 사례에 비춰 봤을 때는 전술한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²⁹⁾ 문제는 소음이 없을 때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저해를 분별하게

나 ‘사람 또는 사람이 조장하는 등’(경장, 33세·연번 45번) 등과 같은 문구의 삽입으로 홀로그램 시위를 현행법의 틀 내에서 포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가상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작금까지 가상의 영역이었기에 배제됐던 대상을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 포괄시켜야 한다. 홀로그램, 로봇, 사물, 기계 등을 한데 아우른 집시법의 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총경, 53세·연번 12번)며 홀로그램 시위 형태의 등장을 시발점으로 기술의 발달을 감안한 유관 법률의 정비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29) 2016년 2월 24일 열린 국내 홀로그램 시위 전에 경찰은 구호를 외치는 등의 소음 발생에 적극적인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시위 현장 바로 옆에 소음관리 차량을 1대 배치했다. 실제 시위에서 홀로그램 영상과 더불어 구호를 외치는 음성이 재생됐지만, 경찰은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다. 홀로그램 시위 전 경찰의 적극적 대응 입장은 시위가 과열되어 폭력적으

해주는 명쾌한 대상인 소음이 없는 홀로그램 시위를 현행법의 틀 내에서는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데 응답자 간 이견이 많지 않았다.

“소음이 없다면, 홀로그램 시위를 위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음이 없는 홀로그램 시위는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상업 광고와 다르겠지 않은가? 홀로그램 시위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광고와 정치 캠페인 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위, 39세·연번 1번)

동일한 맥락에서 홀로그램 시위는 집시법이 아닌 다른 차원의 법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스크린에 사전 제작된 동영상이 상영되는 홀로그램 시위의 양상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문화제와 닮았다. 실제 광화문 홀로그램 시위는 문화제로 신고해 서울시로부터 광장 허가를 받았다.

“홀로그램 시위는 집시법에서 논의하는 시위와는 다르다. 홀로그램 시위를 사람이 하는 여타의 시위와 동일하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법이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법률로 다루지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경장, 36세·연번 5번)

3. 홀로그램 시위의 법적 저촉성

법적 저촉성 측면에서의 일차적 쟁점은 홀로그램 시위의 위해성이었다. 홀로그램 시위의 위해성을 강조한 응답자는 홀로그램 시위 자체가 집회 및 시위 금지의 법적 근거³⁰⁾로 적시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로 변질되는 것은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로 해석된다. 홀로그램 본 행사에 앞서, 사전 5분 여 간 시험 상영된 홀로그램 동영상을 통해 정치적 구호의 음성이 동반됨을 경찰 역시 사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전개하지 않았다.

30) 집시법 제5조 참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홀로그램이 초래할 수 있는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착시,³¹⁾ 그리고 홀로그램 시위 도중 영상과 음성으로 일반 대중의 평안을 훼손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홀로그램이 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로 지적됐다.

앞서의 입장은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의 가능성에 기댄 판단이기에, 홀로그램 시위와 전술된 발생 가능한 피해 간의 인과 관계가 모호하다는 반박을 받았다. 즉, 반대 입장의 응답자들은 홀로그램 시위와 일반 공중 안녕의 훼손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홀로그램 시위의 경우, 광화문 광장 북측 구석에서 개최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과 무관했다. 스크린에 홀로그램을 영사하기 위한 설비도 차도를 등지고 설치되도록 배치되어 차량의 운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홀로그램 시위가 심리적인 위압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물리적인 불편과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경사, 35세·연번 20번)

“홀로그램 시위가 군중을 격앙시키고 일반인들의 평온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해산 명령을 위한 법적 요건이 엄격함을 고려할 때, 유관된 법을 새로 제정하여 경찰 해산 명령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경장, 36세·연번 29번)

무분별한 시위로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준칙 설정의 필요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동의했다. 시위 허용시간, 홀로그램 영상의 밝기와 유관된 소음의 허용 범위, 영상의 투사 대상 및 시위 허용 장소³²⁾ 등이 세부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규제 기준 뿐만 아니라, 강제적 해산 활동이 일어나게 될 상황에서 수반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법적 차원의 명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31) “어린 아이나 노인은 홀로그램 영상과 실물을 혼동하여 보행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다. 차량 내에서는 홀로그램 영상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는 특성은 안전 운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순경, 31세·연번 60번)

32) “홀로그램이 개인의 건물 외벽이나 창에 투사되면, 이는 해당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도 간주될 수 있다.” (경위, 53세·연번 19번)

의견이 제시됐다. 일례로, 홀로그램 유관 장치 시스템 종료 과정 시 주최 측의 사유물에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자칫 공권력의 사유물 통제 활동으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고려한 명문화 작업 역시도 추후 논의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제안한 것이다.

홀로그램 내용도 공중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우려되는 홀로그램 내용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혐오스럽거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다. 이에 대한 노출은 일반 대중의 정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됐다. 두 번째는 특정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반(反) 사회적 영상이다. 이러한 홀로그램은 차후 강경 시위로의 연결과 별도로 그 자체로도 위법 대상이기에 홀로그램 내용이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일부 응답자들은 주장했다. 아울러 홀로그램 역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영사(映寫)되는 영상물이기에 사전(事前) 심의의 필요성이 다수의 응답자에 의해 주장됐다.³³⁾

“집회에 사용되는 홀로그램도 영상물의 한 종류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대중에게 직접 노출되기 전 상영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유관된 영상등급분류에 따른 절차 도입도 필요하다.” (경사, 38세·연번 15번)

이러한 입장에 대해 맞서는 응답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했다.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법적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경사, 35세·연번 20번)

유관 법의 개정과 처리의 방향과 속도 제언 측면에서는 강경론과 신중론으로 응답자의 의견이 양분됐다. 초반부터의 강경한 대응을 강조한 강경론은 예

33) 위와 같은 경찰관의 인식은 위험적 발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본 논문의 한 심사자에 의해서도 “이러한 위험적 의견을 여과 없이 논문에 게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본문에 기재한 까닭은 그러한 인터뷰 결과 또한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현재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방적 차원에서 주로 주장됐고, 신중론은 사례가 적기에 아직은 모호한 홀로그램 시위 개념의 모호성과 유관된 기술의 시위 적용 양상에 비례한 탄력적인 제도 정비의 적절성에 의해 뒷받침됐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법적 지위와 현행법 기준의 저촉성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탐색했다. 이를 위해 현직 경찰 61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주제 논의 대상 선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직무의 전문성에 기초한 판단의 결과였다.

인터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홀로그램 시위를 고찰했다. 이에 따르면, 홀로그램 시위는 정보사회의 대중과 가상현실 기술 간 결합의 산물로 규정될 수 있었다. 홀로그램 시위는 공개 모집 형태로 영상에 등장할 구성원과 시위에 표출할 메시지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시위의 보편적 정당성을 제고하며, 형식적으로는 시위에 등장할 영상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홀로그램 시위가 시위로 간주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경찰관의 견해는 양분됐다. 시위의 목적성에 주목한 응답자는 홀로그램 시위 역시 현행법 내에서도 '시위'로 규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데 반해,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 주체가 된 양상에 중심을 둔 응답자들은 법의 보완 및 추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홀로그램 시위와 공중 안녕의 훼손 간의 상관성에 대한 견해가 상이했지만, 불법·폭력 시위로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칙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동의했다. 유관 준칙 수립 시 시위 시간, 홀로그램 영상의 밝기와 유관된 소음의 허용 범위, 영상의 투사 대상 및 시위 허용 장소 등의 규제 기준 뿐만 아니라, 강제적 해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집시법 8조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지 혹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되는 경우',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의 주변 지역이기에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교통 불편’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장에 의해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혹은 제한될 수 있으며(집시법 12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집회 혹은 시위에서 유관된 확성기 사용 중지 조치될 수 있다(집시법 14조). ‘시각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없다. 그럼에도 홀로그램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응답자들은 사생활의 평온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온’이란 사전적으로 ‘조용하고 평안(平安)한 상태’를 뜻한다. ‘평안’은 사전적으로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의미한다. 탈(顛)이 사고(事故), 즉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뜻함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근거로 한 홀로그램 시위 제한 및 통제 의견을 견지한 이들은 홀로그램 시위의 노출로 일반 대중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경우는 예상 못한 피해이며, 그러하기에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영상에 대한 노출로 인한 일반 대중의 시각적 피해와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영상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홀로그램 내용에 대한 공적인 차원의 관리 필요성은 엇갈렸다. 홀로그램 그 자체에 형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이외에 기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형법 제20조(정당방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판례에 근거하면, 사회상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대법원 선고 97도 2118 판결, 1997.11.14) 혹은 “사회통념에 비치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대법원 선고 2010도 16970 판결, 2011.5.13)로 이해될 수 있다. 일부 응답자들은 사회윤리 혹은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영상의 홀로그램 영상은 집시법과는 무관하게 형법 상 저촉혐의로 법적 처리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공감하는 이들 중 일부는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홀로그램의 사전 심사 규정의 현실화에는 높은 벽이 상존한다. 우선, 홀로그램 사전 심사 규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공적 차원의 사전 검열로 해석될 수 있다. 설혹,

홀로그램 시위를 문화제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표현물의 국가 검열이 불가능한 현 법 체계³⁴⁾ 하에서는 시위에 쓰일 홀로그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전 관리 및 통제는 현실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판단된다.

일반 대중의 원치 않는 시각적 피해와 반사회적 영상의 영사로 인한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홀로그램 사전 심사 규정이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공권력 차원의 홀로그램 시위 내용의 관리·통제 안이 제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르면, 경찰은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 대한 경고와 긴급 시 직접적인 행위 제지를 할 수 있다. 비록 홀로그램 시위에 대한 유관된 명시적 법적 근거는 부재하지만, “(행해지려고) 인정될 때”라는 문구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의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서 ‘그 밖의’에 대한 폭 넓은 해석을 근거로 응답자들은 홀로그램 시위의 현행법 내 포괄에 타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의무합치적 재량범위 내 필요한 조치 혹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를 근거로 집회신고 단계에서의 경찰의 사전 개입은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유관된 법의 조문화가 선행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사유로 행사되는 경찰권은 집회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에, 경찰권의 행사는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³⁵⁾ 법의 준수로 확보되는 절차적 공정성은 경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의 사적 폭력을 구축(驅逐)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³⁶⁾ 2016년 2월 광화문에서 열린 국내 첫 홀로그램 시위에서 엄포에 머물렀던 경찰의 조치는 현재의 법 테두리와 근거가 미약한 강경 대응의 역효과를 우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현행 법 하에서는 홀로그램 시위 그 자체

34) 헌법재판소 선고 93헌가13 판결(1996.10.4) 참고

35) 이회훈, 집회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8권 제3호, 2008, 89-109면

36) 이영섭·박지선,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 정당성 연구: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경찰학연구』 제15권 제2호, 2015, 127-158면

혹은 그것이 기반이 된 현저한 위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권력은 홀로그램 시위를 시민 단체 주도의 문화제와 동등한 차원에서 바라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역시도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 주제의 논의 대상을 경찰로 한정함에 따라, 보다 폭 넓은 법적 고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 과제로서 남겨두려 한다. 61명의 적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표본의 선택 과정에서 성별, 연령, 계급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표본이 논의 대상으로 선택한 경찰이란 직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 아울러 경찰이란 직군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여 연구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높이려 했지만, 원천적으로 모집단을 경찰로 한정된 접근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다각도의 조명을 어렵게 했다. 허나, 경찰이라는 유관 주제와 관련된 주요 주체를 통해 앞선 연구의 흠결을 일부 상쇄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과 같은 탐색적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유관된 주요 주체의 확보를 통해 연구의 구성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Yin, 2003, 35쪽). 추후 표본의 크기를 확대한 뒤, 양적 연구 방식으로 본 논문에서 논의된 주제를 재검토하는 작업 역시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는 홀로그램 시위라는 새로운 정치 캠페인에 대한 탐색적 성격이 강하며, 그에 대한 향후 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법적 차원의 심도 있는 고찰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유관된 법적 논증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

여러 범집행자 중 연구 대상을 경찰관에 한정된 설정 역시도 본 연구의 한계로서 지적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캠페인이 기존의 사회적 틀과의 충돌 지점 그리고 그것의 사회 안으로의 안정적 편입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새로운 양식이 사회와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할 때, 경계선에서 유관된 사안을 마주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역할자의 인식에 접근하는 방법은 실효적으로 학계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채택되어 왔다. 동일한 맥락 하에서 경찰관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다. 즉, 본 연구진은 시위와 집회를 현장에서 마주하고 유관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직무적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경찰관을 연구 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 전문가를 선택한 결정이 보다 본 연구의 목적에 실효적일 수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법학 교수 등 다른 법 전문가가 경찰에 비해 법 자체에 대한 보다 높은 학술적 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법 전문가들이 경찰보다 유의한 탐색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는 비판 역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는 홀로그램 시위 주체자의 인식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와 같은 한계는 집회의 주체와 경찰 이외의 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통해 후속 과제로서 수행하려 한다.

연구진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치캠페인 관점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조망하고, 홀로그램 시위와 기존 제도와의 충돌 지점을 탐색한 본 논문이 새롭게 등장한 언로(言路)의 안정적인 사회적 편입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본 연구는 사람 이외 대상이 정치적 활동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상황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차원의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영역이 확대되면서, 홀로그램에 이어 로봇이 사람의 정치적 활동 대체자로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법을 포함한 사회과학적 차원의 대비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홀로그램 시위를 다룬 연구는 형사법 역시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적용 하에서 벌어지게 될 정치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단행본

김상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경찰청, 2008.

문재완,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학술논문

- 김남·박재형·임영대·박미란. “홀로그래피 기술 개요”. 「방송과 미디어」, 제16권 제2호,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1, 8-19면.
- 김승철, “실감 3차원 동영상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한 홀로그램 콘텐츠의 효율적인 생성 기법”. 「한국통신학회지」, 한국통신학회, 제32권 제2호, 2015, 98-107면.
- 나은영,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한국심리학회, 제9권 제2호, 1995, 69-83면.
- _____, “전달자의 전문성 및 메시지의 수와 질이 저·중·고 관여수준을 지니는 태도의 변화량과 인지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한국심리학회, 제15권 제1호, 2001, 17-37면.
- 박경정·최규범, “집회장소 사용에 관한 법적 고찰”,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제7호, 2004, 84-113면.
- 백육인, “촛불시위와 대중”,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통권 74호, 2008, 159-188면.
- 백창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신고제의 법리 고찰”,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제19호, 2006, 3-32면.
- 이영섭·박지선,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 정당성 연구: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제15권 제2호, 2015, 127-158면.
- 이주락, “영·미 집회·시위 관리기법의 검토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치안정책연구소, 제27집, 2011, 5-114면.
- 이창무, “국내·외 집회시위 및 경찰 관리방식의 변천과정 연구”, 「치안논총」, 치안정책연구소, 제23집, 2007, 321-403면.
- 이항우,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하향적 집단행동: 2008년 촛불시위”.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통권 제93호, 2012, 244-274면.
- 이희훈, “집회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제8권 제3호, 2008, 89-109면.

- _____, “사이버 집회, 시위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1권 제2호, 2010, 499-521면.
- 정일권, “이해당사자 집단 의견과 여론의 차별성 지각의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제50권 제4호, 2006, 279-301면.
- 최항섭, “레비의 집단지성: 대중지성을 넘어 전문가지성의 가능성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26권 제3호, 2009, 287-322면.
- 황규진·김학경·성주환·권예원, “스웨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특별경찰전술) 연구”,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제12권 제1호, 2012, 77-104면.

[외국문헌]

단행본

- Rheingold, H.,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Cambridge: Basic books, 2002.
- Smelser, N. J.,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ird edition)*. California: Sage, 2003.
- Byrne, D. N. (2007), Public Discourse, Community Concerns, and Civic Engagement: Exploring Black Social Networking Traditions on BlackPlanet.com.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3 No.1, 2007, 319-340.

[Abstract]

Hologram-demonstration's legal status and its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Kim, Daewon

Ph.D., Policy Support Team, Kakao corporation

Ji, Young-Hwan

Adjunct Professor, Law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On 10 April 2015, a world's first hologram protest was held in Spain. The protest in which hologram images marched on the street created a great sensation. On February 2016, another hologram demonstration was held in Seoul.

First of all, we examined characteristics of hologram protest, and found out that it is defined as a product drawn from combination between the public in the era of information society and virtual reality technology. People and messages would appear on the hologram are collected openly, which endows authority of legitimacy. It is also interpreted as a strategy to obtain various materials for the hologram.

This study was to explore hologram-demonstration's legal status and its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61 police officers were interviewed for the study. As a result, views on hologram-demonstration's legal status came in two: police officers putting weight on hologram-demonstration's purpose argue that it can be controlled under existing laws, however, the others emphasized an additional task to complement the current laws.

Also, interviewees are revealed to have various views on the idea that the hologram-demonstration would spoil public peace and stability.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among the interviewees about a need to enact concrete rules for preventing a hologram-demonstration from being turned into a violent and unlawful protest. A rating system on hologram contents is a controversial issue. Without an occurrence of social demand for the prevention of adverse effect caused by hologram demonstration, police officer may continue to consider it a kind of cultural event for political propaganda.

Some respondents argued that advance measures needs to be considered for avoiding adverse results. However, it is a weak likelihood that regulations supporting prior actions exercised by police officers are established. In our opinion, under the existing law, it is impossible for police officers to take active actions, thus they have no choice to regard hologram demonstrations as cultural festivals.

Key words : Hologram demonstration, Legal status, Conflicts with existing law, Police officer, Interview

부록

〈부록 1〉 인터뷰 대상자의 사회통계 정보

연번	성별	연령	경찰 경력	계급	연번	성별	연령	경찰 경력	계급
1	남성	39	16	경위	32	여성	33	9	경사
2	남성	36	12	경감	33	남성	59	35	경위
3	남성	47	25	경위	34	남성	33	4	순경
4	여성	25	3	순경	35	남성	44	21	경감
5	여성	36	10	경장	36	남성	32	5	경장
6	남성	31	8	경장	37	남성	49	27	경위
7	남성	46	19	경위	38	남성	46	16	경위
8	여성	28	3	순경	39	남성	51	27	경위
9	남성	42	15	경위	40	남성	38	9	경사
10	남성	40	13	경위	41	남성	43	18	경사
11	남성	57	32	경감	42	남성	37	3	순경
12	남성	53	32	총경	43	남성	54	30	경위
13	남성	35	2	순경	44	남성	39	9	경장
14	남성	36	7	경장	45	남성	33	9	경장
15	남성	38	10	경사	46	남성	27	6	경장
16	남성	35	9	경사	47	남성	30	4	경장
17	남성	60	35	경위	48	남성	31	3	순경
18	남성	50	27	경위	49	남성	42	15	경위
19	남성	53	26	경위	50	남성	31	4	경장
20	남성	35	9	경사	51	남성	46	24	경위
21	남성	37	12	경장	52	남성	34	7	경장
22	여성	37	5	경장	53	여성	28	3	순경
23	남성	41	12	경사	54	남성	33	7	경장
24	남성	35	8	경장	55	남성	39	8	경장
25	여성	32	8	경장	56	남성	36	6	경장
26	여성	37	11	경사	57	남성	37	9	경사
27	여성	32	3	순경	58	여성	30	7	경장
28	남성	41	14	경사	59	남성	28	3	순경
29	남성	36	7	경장	60	남성	31	2	순경
30	여성	30	3	순경	61	남성	61	32	경감
31	남성	38	11	경사					

주: 연령과 경력은 2016에서 해당 연도를 뺀 뒤 1을 더한 값. 연령과 경력의 단위는 각각 세와 년.